

기본예탁금 적용기준

제정 2011.07.29

개정 2013.09.30

개정 2014.12.29

개정 2017.03.15

사전위탁증거금				
투자자구분		기본예탁금	선물상품	옵션관련 상품 ^{주1)}
기관, 외국인 ^{주2)}	일반기관투자자		1단계 : 500만원	1단계 : 500만원
개인	(법상)전문투자자		2단계 : 1,500만원	2단계 : 1,500만원
	기존투자자 ^{주3)}		3단계 : 3,000만원	3단계 : 3,000만원
	(법상) 일반투 자자	신규투자자	사전교육 및 기본 예탁금기준 상향 조정	1단계 : 3,000만원 2단계 : 5,000만원 3단계 : 10,000만원

주1) 옵션관련 상품 :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

주2) 외국인 : 비거주 외국인 개인 및 법인

주3) 기존투자자 : 한국거래소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제도 시행(2014.12.29)이전에 계좌를 개설하고,
일정 기간 거래경험이 있는 투자자

기본 예탁금 차등 적용 기준

- 적용 대상 : 기관투자자, 자본법상 전문투자자, 기존 투자자^{주3)}, 외국인^{주2)}

예탁금 단계 및 금액		적용 기준
1단계 (우대)	500만원	-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탁자 - 미수 발생이 없는 위탁자 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위탁수수료 금액이 100,000원 이상 이거나, 개설일로부터 미결제약정(장중 미결제약정 포함)을 보유한 후 30일이 경과한 위탁자
2단계 (기본)	1,500만원	- 신규계좌 - 1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3단계 (상향)	3,000만원	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
- 적용 대상 : 신규 개인투자자

예탁금 단계 및 금액		적용 기준
1단계 (우대)	2,000만원	-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탁자 - 미수 발생이 없는 위탁자 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위탁수수료 금액이 100,000원 이상 이거나, 개설일로부터 미결제약정(장중 미결제약정 포함)을 보유한 후 30일이 경과한 위탁자
2단계 (기본)	3,000만원	- 신규계좌 - 1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3단계 (상향)	5,000만원	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
- 적용 대상 : 옵션관련 상품 ^{주1)}을 거래하고자 하는 신규 개인투자자

예탁금 단계 및 금액		적용 기준
1단계 (우대)	3,000만원	-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탁자 - 미수 발생이 없는 위탁자 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위탁수수료 금액이 100,000원 이상 이거나, 개설일로부터 미결제약정(장중 미결제약정 포함)을 보유한 후 30일이 경과한 위탁자
2단계 (기본)	5,000만원	- 신규계좌 - 1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3단계 (상향)	10,000만원	- 2단계 투자자 중 3개월 이내 미수 미변제가 3회 이상인 계좌

▶ **기본예탁금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 구분에 따른 단계의 2단계부터 적용한다**

(단, 타사에서 타사에서 1단계를 적용 받는 위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)

▶ 기본예탁금이 면제되는 투자자 :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

▶ 미니금선물, 돈육선물 거래만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50만원 적용한다

▶ 기본예탁금 변경 절차

- (1) 기본예탁금의 우대적용은 관리자가 우대증거금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본부장의 품의를 득 한 후 영업지원팀에 신청한다.
- (2)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신용도, 거래실적, 결제불이행 등 위탁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변경 할 수 있다.